

2023년도 문화재위원회

**제7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**

▣ 일 시 : 2023. 7. 25.(화) 14:00

▣ 장 소 : 문화재청 1동 906호

**문 화 재 위 원 회**

## □ 고지사항

1.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0조에 따라,
  -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,
  -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,
  -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(법인의 상근·비상근 임직원 포함)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,
  -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,
  -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
  -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.
  -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.
2.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3. 아울러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9조 및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4.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# 근대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 안건 목록

## 【심의사항】

1	사적 「창원 진해우체국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	
2	사적 「창원 진해우체국」 주변 현상변경	
3	사적 「서울 독립문」 주변 현상변경	
4	사적 「익산 나마위성당」 주변 현상변경	
5	사적 「대구 계산동성당」 주변 현상변경 허가변경(재심의)	
6	「호열자병예방주의서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	

## 【검토사항】

7	「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 및 비준관계 문서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	
8	「미사일록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	
9	「고성 왕곡마을 정미소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	
10	「거창사건 학살 관련 유지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	
11	「인천 조흥상회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	
12	국가등록문화재 「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」 복원정비(안) 검토	

## 【보고사항】

13	국가지정(등록)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	
14	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	

---

# 심 의 사 항

---

## 1. 사적 「창원 진해우체국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

### 가. 제안사항

경남 창원시 소재 사적 「창원 진해우체국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보호법 제13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제5항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적 「창원 진해우체국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창원시장
- (2) 대상문화재명 : 사적 「창원 진해우체국」( '81.9.25. 지정)
  - 소재지 :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(통신동)
- (3) 세부내용 : 허용기준 조정
  - 관련규정 :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(제5067호, 2021. 11. 4. 일부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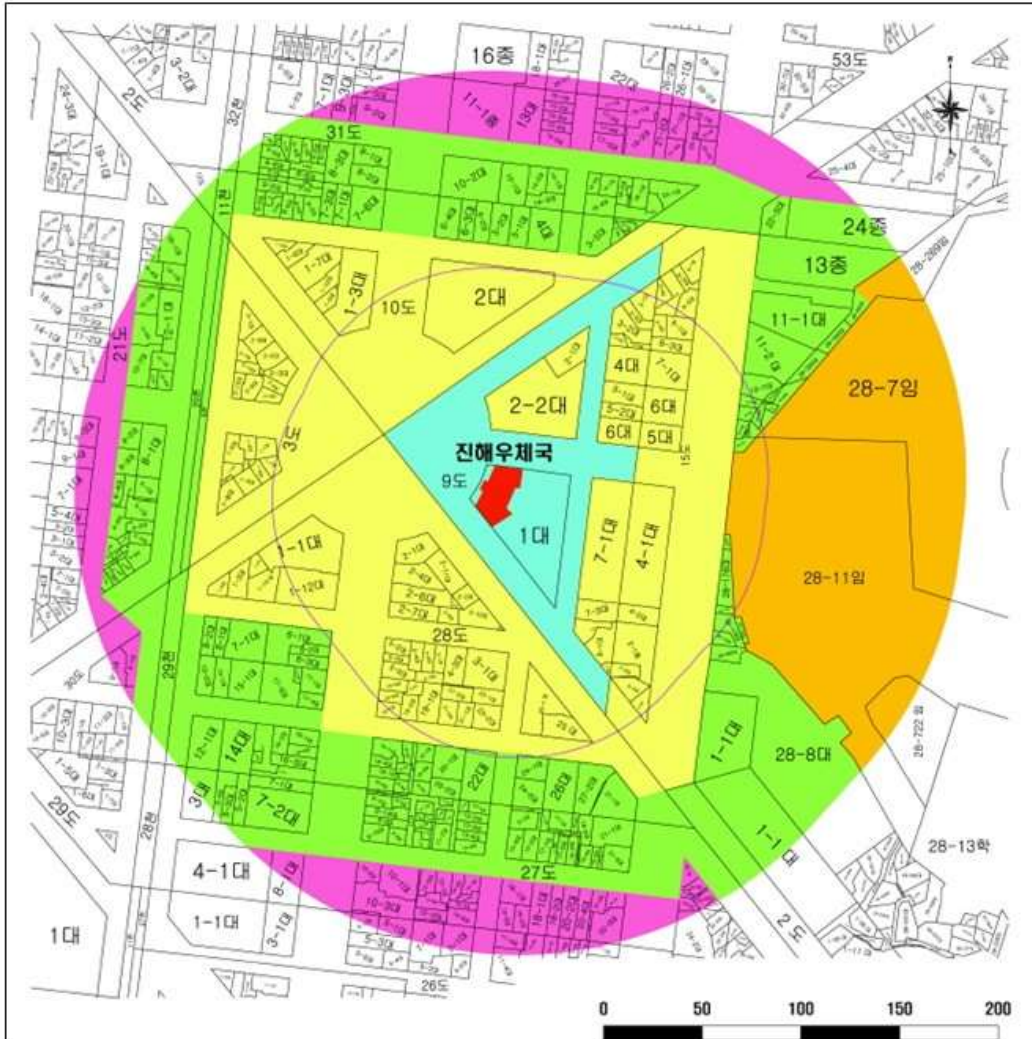
제25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)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# 1. 국가지정문화재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곽경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
- 나.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

-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결과 : 의견 제출 없음
  - '23. 5. 24. ~ 6. 13. (21일간/창원시 홈페이지 등)

○ 현행 <문화재청 고시 제2016-139호 / 2016.12.26.>



1구역-노란색, 2구역-초록색, 3구역-보라색, 4구역-주황색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이상)
보호구역	개별심의(원지형 보존)	
1구역	최고높이 8m 이하	최고높이 11m 이하
2구역	최고높이 16m 이하	최고높이 19m 이하
3구역	최고높이 24m 이하	최고높이 27m 이하
4구역	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.재축을 허용함(보호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(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)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(4구역 제외)</li> <li>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</li> </ul>	

○ 조정(안)

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이상)
1구역	최고높이 8m 이하	최고높이 11m 이하
2구역	최고높이 16m 이하	최고높이 19m 이하
3구역	최고높이 24m 이하	최고높이 27m 이하
4구역	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.재축을 허용함(1구역, 2구역, 3구역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(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)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(4구역 제외)</li> <li>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</li> </ul>	

○ 조정사항 요약

- 1구역은 기존 1구역 그대로 설정함
- 2구역은 기존 구역에서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일부 지역을 추가 설정함
- 3구역은 2구역 외곽으로부터 반경 200m까지로 설정함
- 4구역은 3구역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m까지로 설정함

## 2. 사적 「창원 진해우체국」 주변 현상변경

### 가. 제안사항

경남 창원시 소재 사적 「창원 진해우체국」 주변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「창원 진해우체국」 주변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창원시 진해구청장
- (2) 대상문화재명 : 사적 「창원 진해우체국」('81.9.25. 지정)
  - 소재지 :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(통신동)
- (3) 세부내용
  - 신청위치 : 경남 창원시 진해구 평안동 2번지
    - ※ 허용기준 : 1구역(평지붕 8m, 경사지붕 11m이하)
    - ※ 이격거리 :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3m
  - 세부내용 :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
    - 용도 : 업무시설(공공업무시설)
    - 대지면적 : 1,924.0000 m<sup>2</sup>
    - 건축면적 : 1,252.2894 m<sup>2</sup>
    - 연면적 : 3,441.4388 m<sup>2</sup>
    - 층수 및 최고높이 : 지하1층, 지상3층 / 16.5m (전면 10.3m)



### 3. 사적 「서울 독립문」 주변 현상변경

#### 가. 제안사항

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「서울 독립문」 및 「서울 구 서대문형무소」에서 '서대문독립페스타'를 개최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「서울 독립문」 과 「서울 구 서대문형무소」 일대에서 '서대문독립페스타'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# 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서울시 서대문구청장

(2) 대상문화재명

- 사적 「서울 독립문」 ('63.01.21. 지정)
 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번지
- 사적 「서울 구 서대문형무소」 ('88.02.27. 지정)
 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

(3) 세부내용

- 신청위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외 6필지 일원
  - ※ 허용기준 : 문화재구역 및 허용기준 1구역(개별심의)
- 세부내용 : 2023년 서대문독립페스타 개최를 위한 무대 등 가설물 설치 등
  - 설치기간 : 2023. 8. 10. ~ 8. 15. (개최기간 2023. 8. 12. ~ 8. 15.(4일간))
  - 독립문 메인무대 (개막식, 패션쇼 등)
    - 무대규모 : 15m × 9.1m, 높이 1m 무대단
    - 음향설치탑 : 8m × 6m, 높이 8m 철물트러스 구조 2조
  - 체험부스 : 역사관 및 독립공원 내 가설물(몽골텐트, 캐노피텐트) 55개동
  - 주요 프로그램(안)
    - 축하공연 : 개막 축하공연, 독립문런웨이(패션쇼), 오케스트라공연
    - 참여 프로그램 : 걷기대회, 독립군 전투체험 등
    - 체험 프로그램 : 독립 체험부스 (40여개 단체)
    - 전시 프로그램 : 광복의 그날 특별전, 독립운동가 인물 전시

## 4. 사적 「익산 나바위성당」 주변 현상변경

### 가. 제안사항

전북 익산시 소재 사적 「익산 나바위성당」 내에 성지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「익산 나바위성당」 보호구역에 성지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익산시장
- (2) 대상문화재명 : 사적 「익산 나바위성당」('81.9.25. 지정)
  - 소재지 :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(화산리)
- (3) 세부내용
  - 신청위치 : 전남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42-6,7,8,9,10,11번지
    - ※ 보호구역임
    - ※ 이격거리 : 문화재구역으로부터 63m 이격
  - 세부내용 : 성지문화체험관 건립
    - 용도 : 종교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제1종 근생(휴게음식점)
    - 대지면적 : 4,479 m<sup>2</sup>
    - 건축면적 : 1,409.76 m<sup>2</sup>
    - 연면적 : 2,481.63 m<sup>2</sup>
    - 층수 및 최고높이 : 지하1층, 지상2층 / 9.52m
    - ※ 기존 피정의 집 철거는 향후 계획으로 금회 현상변경 대상 제외

## 5. 사적 「대구 계산동성당」 주변 현상변경 허가변경(재심의)

### 가. 제안사항

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「대구 계산동성당」 주변에 음악종 구조물을 설치하는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「대구 계산동성당」 주변에 음악종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변경된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  - '22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('22.10.25.) : 부결
    - 사유 : 음악종 구조물은 규모가 커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
  - '22년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('22.12.06.) : 조건부가결
    - 사유 : 색깔 등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추진
  - '23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('23.06.27.) : 보류
    - 사유 : 문화재와 어울리는 형태로 보완 후 재심의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
- (2) 대상문화재명 : 사적 「대구 계산동성당」('81.9.25. 지정)
  - 소재지 : 대구 중구 서성로 10 (계산동2가 71-1외4필지)
- (3) 세부내용
  - 신청위치 : 대구 중구 서성로 10(계산동2가 71)
    - ※ 허용기준 : 1구역(개별심의)
    - ※ 이격거리 :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.9m이격
  - 세부내용 : 음악종 구조물 설치
    - 위치 : 파고라 철거 후 설치
    - 형태 및 규모

(단위: m)

	A안	B안	C안
형태	성당 측량 형상화	종탑 형상화	도시 환경 조형물
규모(m)	7.2 × 7.2 × (H)4.8~6.3	7.2 × 7.2 × (H)7.8	7.2 × 7.2 × (H)6~7.5

※ 이전 심의 자료

	‘22. 10. (부결)	‘22. 12.(조건부가결)	‘23.6.(보류)
위치	파고라 철거 후 설치	역사관 옥상 위	파고라 철거 후 설치
형태	옛 사제관 형상화	옛 사제관 형상화	-
규모	7.2m × 7.2m × H 7.9m	5.7m × 5.7m × H 4.5m (설치 후 최고높이 11.64m)	7.2m × 7.2m × H 7.8m

## 6. 「호열자병예방주의서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

### 가. 제안사항

○○○○○○○ 소재 「호열자병예방주의서」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('23.5.23.)를 거쳐 등록 예고한 「호열자병예방주의서」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# 다. 주요내용

#### (1) 대상문화재

문화재명칭(안)	수량	규격(cm)	제작연대	소유자	소재지
호열자병 예방주의서	1건	14.8×21.4	1902년	○○○○ ○○○	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○ ○○○

#### (2) 추진경과

- ('21.3월~'21.10월) : '근현대문화유산 위생·보건 분야 목록화 조사' 연구용역 실시
  - 「호열자병예방주의서」 포함 총 13건을 등록가치가 있는 A등급으로 선정
- ('22.4.21.) : 근현대문화유산 위생보건 분야 국가등록문화재 추진 계획 알림 (문화재청 → 충북도청)
- ('22.11.8.) : 문화재 등록 신청(충북도청 → 문화재청)
- ('23.4.5.) :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
- ('23.5.23.) :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'가결'

(3) 등록예고 : '23.6.15.~7.14.(30일간) \* 의견 없음

---

# 검 토 사 항

---

## 7. 「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 및 비준관계 문서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

### 가. 제안사항

○○○○○○○○ 소재 「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 및 비준 관계 문서」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‘21년도 ‘근현대문화유산 외교·통상분야 목록화 조사’ 결과를 토대로, 관계전문가 현지조사(1차 ’22.2.3. / 2차 ’23.6.7.)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#### (1) 대상문화재

문화재명칭(안)	수량	규격(cm)	제작연대	소유자	소재지
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 및 비준 관계 문서	15건	23.2 × 17 등	1882~1883 추정	국유	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#### (2) 검토사항 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

#### (3) 추진경과

- (’21.3월~’21.11월) : ‘근현대문화유산 외교·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’ 연구용역 실시
  - 「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 및 비준 관계 문서」 포함 총 39건을 등록가치가 있는 A등급으로 선정
- (’22.2.3.) :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
- (’23.6.7.) : 문화재 등록 검토 추가 조사 실시

### 8. 「미사일록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

#### 가. 제안사항

○○○○○○○○ 소재 「미사일록」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「미사일록」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('22.10.14.)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('23.5.25.)를 실시하였고,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##### (1) 대상문화재

문화재명칭(안)	수량	규격(cm)	제작연대	소유자	소재지
미사일록	1건	28.5 × 23	1896~1897 추정	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	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○

##### (2) 검토사항 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

##### (3) 추진경과

- ('21.3월~'21.11월) : '근현대문화유산 외교·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' 연구용역 실시
- ('22.10.14.) : 문화재 등록 신청(경기도 → 문화재청)
- ('23.5.25.) :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



## 9. 「고성 왕곡마을 정미소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

### 가. 제안사항

강원도 고성군 소재 「고성 왕곡마을 정미소」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('22.6.16.)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('23.4.13.)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고성군수

(2) 대상문화재

- 문화재명칭(안) : 고성 왕곡마을 정미소
- 소재지 :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473-1
- 소유자 : 강원도 고성군
- 수량 : 건물 1동
- 건립시기 : 1968년
- 구조 및 규모 : 목조, 84.195㎡

(3) 검토사항 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

(4) 추진경과

- ('22.6.16.) 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(강원도 → 문화재청)
- ('23.4.13.) :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
- ('23.4.21.) : 현지조사에 따른 보완 요청(문화재청 → 고성군)
  - \* 정미소 내부 도정시설에 대한 사용 이력(교체여부 등) 및 정미소의 본래기능을 유지하는 구체적 활용계획 보완 요청
- ('23.4.27.) : 보완의견 통보(고성군 → 문화재청) \* 기제출 자료 외 보완의견 없음

### 10. 「거창사건 학살 관련 유지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

#### 가. 제안사항

경남 거창군 신원면 소재 「거창사건 학살 관련 유지」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('21.8.19.)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('22.5.10.)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: 거창군수
- (2) 대상문화재
  - 문화재명칭(안): 거창사건 학살 관련 유지
  - 수량 및 면적: 청연마을 희생장소 등 5필지(3,414㎡)

신청대상	수량	면적			소재지	소유자
		당초	조정	최종		
청연마을 희생장소	1개소	877㎡	537㎡	537㎡	신원면 덕산리 217-12	거창군
탄량골 희생장소	1개소	2,700㎡	150㎡	150㎡	신원면 대현리 551	거창군
		-	660㎡	-	신원면 대현리 1575	국토교통부
		-	306㎡	-	신원면 대현리 1575-21	국토교통부
박산골 희생장소	1개소	4,093㎡	1,164㎡	1,164㎡	신원면 과정리 산66-6	거창군
		122㎡	-	-	신원면 과정리 258	거창군
박산합동묘역	위령비 1기, 묘 3기 (남/여/소아)	1,115㎡	1,087㎡	1,087㎡	신원면 과정리 산66-4	거창군
		3,588㎡	476㎡	476㎡	신원면 과정리 산66-8	거창군
		2,074㎡	-	-	신원면 대현리 산63-9	거창군
계		14,569㎡	4,380㎡	3,414㎡		

-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정 등록구역 중 일부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신청내용 변경
  - \* 변경내용: 당초 신청면적 14,569㎡ →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정 신청면적 4,380㎡ → 최종 신청면적 3,414㎡
  - \* 변경사유: '탄량골 희생장소' 구역 일부 소유자(국토교통부) 비동의

- 구조: 희생장소, 합동묘역, 위령비
- 시기: (희생장소 및 총탄바위)1951. 2. 9.~2. 11., (합동묘역)1954. 4. 5., (위령비)1960. 11. 18. \* 거창사건 발생: 1951. 2. 9.~2. 11.

(3) 검토사항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

#### (4) 추진경과

- ('05.08.4.): '박산합동위령비' 2005년 제3차 근대분과위원회 등록 검토: 보류
  - 현지조사 후 재검토
- ('21.8.19.)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(경상남도→문화재청)
  - 신청대상 확대하여 재신청(희생장소, 합동묘역 추가)
- ('22.5.10.):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
- ('22.5.16.): 보완자료 제출요청(문화재청→경상남도)
  - 요청사항: 등록구역은 실제 사건발생 장소로 한정하여 조정
- ('22.10.5.): 보완자료 제출(경상남도→문화재청)
  - 등록면적 수정 제출( $14,569\text{m}^2 \rightarrow 4,380\text{m}^2$ )
- ('22.10.18.): 보완자료 제출요청(문화재청→경상남도)
  - 요청사항: 등록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
- ('22.12.6.): 보완자료 제출(경상남도→문화재청)
- ('23.5.24.): 보완자료 제출요청(문화재청→경상남도)
  - 요청사항: 조정 등록구역에 대한 소유자 동의서
- ('23.6.20.): 보완자료 제출(경상남도→문화재청)
  - 조정 등록구역 중 일부 소유자 비동의로 신청면적 축소( $4,380\text{m}^2 \rightarrow 3,414\text{m}^2$ )

## 11. 「인천 조흥상회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

### 가. 제안사항

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「인천 조흥상회」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('22.7.27.)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('23.1.12.)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: (특)문화유산국민신탁

(2) 대상문화재

- 문화재명칭(안): 인천 조흥상회
- 소재지: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8, 8-1
- 수량·면적: 3동, 건축면적 198.347m<sup>2</sup>(대지면적 347m<sup>2</sup>, 연면적 275.039m<sup>2</sup>)
- 층수(높이): 지상2층
- 구조: 목조, 연와조
- 시기: 1956년 건립(추정)

(3) 검토사항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

(4) 추진경과

- ('22.7.27.)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(인천광역시→문화재청)
- ('23.1.12.):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
- ('23.1.16.): 보완자료 제출요청(문화재청→인천광역시)

\* 요청사항

- ① 건물의 구체적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- ② 가옥의 원형과 증축 부분의 구분을 위한 근거 자료
  - ③ 건축물대장·건물등기에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구분을 위한 근거 자료
  - ④ 제출 자료 중 건축 연혁과 고증자료 등에서 내용이 불일치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
  - ⑤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연혁을 알 수 있는 자료(필요시 폐쇄대장)
  - ⑥ 상점 및 가옥의 준공 시점 확인
  - ⑦ 등록신청 면적 중 불법 확장된 부분을 알 수 있는 자료
- ('23.6.28.): 보완자료 제출(인천광역시→문화재청)

## 12. 국가등록문화재 「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」 복원정비(안) 검토

### 가. 제안사항

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「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」의 복원정비(안)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「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」 보수정비와 관련하여 지붕 및 입면 등을 복원하고자 하는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: 영광군수
- (2) 대상문화재명: 국가등록문화재 「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」(’17.10.23. 등록)
  - 소재지: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로2길 64-1 (묘량면)
  - 주요 보수이력 및 현황
    - (1936) 건립: 초가 5칸
    - (1955) 지붕을 함석으로 개량
    - (1983) 온돌을 마루로 개조, 불단 개조, 전면 새시 설치 등
    - (2023 현재) 지붕 슬레이트 기와, 동쪽 끝 칸 일부 증축, 기단부 시멘트 바름, 아궁이 철거 등 변형되어 있음. 지붕 누수 및 주요 구조재 충해와 기둥 좌굴 현상 등이 보임
- (3) 사업 추진경과
  - (2020) 정기조사 [E(수리) 등급]
  - (2022) 정밀안전진단 실시 [종합결과 : F]
    - 요약) 일부 틈보와 중도리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며, 목재 부후가 상당히 진행되었음. 초석 기단 문힘, 기둥 및 벽체 인접 부재 이격, 배수 불량, 기둥 기울기 변형 및 좌굴 등 전체 가구 및 결구부 손상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해체 보수가 필요함
  - (2023.2.) 보수정비 해체보수 설계 교부 [사업예산: 30,000천원]
    - (2023.6.21.) 복원정비로 지침변경 신청

(4) 검토사항 : 1936년 기준으로 하는 복원정비(안)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지붕: 골슬레이트 → 초가
- 기둥 및 벽체: 전면 우측 증축부 및 새시 철거 후 방 복원
- 내부: 천장 노출 등
- 기타: 아궁이 노출 및 굴뚝 복원

---

# 보고 사항

---

### 13. 국가지정(등록)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

#### 가. 보고사항

국가등록문화재 「대한매일신보」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#### 나. 처리내용

문 화 재	소재지	신청인	사 업 내 용	처리 결과	처리 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등록 문화재  대한매일 신보 (2012-3)	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	<보존처리> (1) 허가 받는 자 :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(2) 허가 내용 ○ 내 용 : 대한매일신보 보존처리 ○ 수 량 : 900매 총4,941매=2,819(완료)+900(당해)+1,222(예정) (3) 허가(수행)기간 : '23.6.23.~12.20. (4) 추진경과 ○ 문화재 등록 '12.10.17. ○ 정기조사('18, '20) E(수리) 등급 ○ 보존처리 내역('17~'22/6년간)	허가	'23.6.23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차수</th> <th>신청일</th> <th>허가통지일</th> <th>보존처리기간</th> <th>수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차</td> <td>'17.4.26.</td> <td>'17.5.31.</td> <td>'17.7.25.~12.15.</td> <td>298매</td> </tr> <tr> <td>2차</td> <td>'18.3.12.</td> <td>'18.5.9.</td> <td>'18.7.20.~12.19.</td> <td>304매</td> </tr> <tr> <td>3차</td> <td>'19.6.26.</td> <td>'19.7.26.</td> <td>'19.8.1. ~12.18.</td> <td>298매</td> </tr> <tr> <td>4차</td> <td>'20.5.25.</td> <td>'20.6.18.</td> <td>'20.7.1. ~12.15.</td> <td>644매</td> </tr> <tr> <td>5차</td> <td>'21.5.21.</td> <td>'21.5.28.</td> <td>'21.6.14.~ 12.15.</td> <td>610매</td> </tr> <tr> <td>6차</td> <td>'22.5.27.</td> <td>'22.6.24.</td> <td>'22.6.24.~ 12.20.</td> <td>665매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계</td> <td>2819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차수	신청일	허가통지일	보존처리기간	수량	1차	'17.4.26.	'17.5.31.	'17.7.25.~12.15.	298매	2차	'18.3.12.	'18.5.9.	'18.7.20.~12.19.	304매	3차	'19.6.26.	'19.7.26.	'19.8.1. ~12.18.	298매	4차	'20.5.25.	'20.6.18.	'20.7.1. ~12.15.	644매	5차	'21.5.21.	'21.5.28.	'21.6.14.~ 12.15.	610매	6차	'22.5.27.	'22.6.24.	'22.6.24.~ 12.20.	665매	합 계				2819매		
차수	신청일	허가통지일	보존처리기간	수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차	'17.4.26.	'17.5.31.	'17.7.25.~12.15.	298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차	'18.3.12.	'18.5.9.	'18.7.20.~12.19.	304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차	'19.6.26.	'19.7.26.	'19.8.1. ~12.18.	298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차	'20.5.25.	'20.6.18.	'20.7.1. ~12.15.	644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차	'21.5.21.	'21.5.28.	'21.6.14.~ 12.15.	610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차	'22.5.27.	'22.6.24.	'22.6.24.~ 12.20.	665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		2819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## 14.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결과보고

사적 「서울 구 서대문형무소」 주변 현상변경

### 가. 보고사항

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### 나. 소위원회 개요

- 일시/장소 : '23.6.27.(화) 13:00 / 정부대전청사 1동 9층 대회의실
- 참석 위원 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
- 회의 안건 : 사적 「서울 구 서대문형무소」 주변 현상변경(독립의 전당 건립)
- 회의 결과 : 조건부가결

### 다. 진행경과

- '23년 제3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('23.3.28.) : 보류
    - 문화재를 고려하여 규모·형태 등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
  - '23년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('23. 5. 23.) : 조건부 가결
    -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함
    - 위원구성 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
  - '23년 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소위원회 심의('23. 6. 13.) : 보류
    - 독립문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연결되는 주동선을 고려하여 건물배치 재검토
    - 문화재경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에서부터 진입 시 보여지는 눈높이 상의 투시도 제시
- ※참석 위원 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

### 라. 보고내용

- 소위원회 심의 결과

내 용	검토의견
(1) 신청인 : 국가보훈처장 (2) 대상문화재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사적 「서울 구 서대문형무소」 ('63.01.21. 지정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</li></ul></li><li>○ 사적 「서울 독립문」 ('63.01.21. 지정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번지</li></ul></li></ul>	< 조건부가결 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조경 및 건물색채 등에 대해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</li></ul>

내 용		검토의견	
(3) 세부내용 ○ 신청위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※ 허용기준 : 1구역(개별심의) ※ 이격거리 : 「서울 구 서대문형무소」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60m 이격 「서울 독립문」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90m 이격 ○ 세부내용 : 독립의 전당 건립 - 주요시설 : 위패보안실, 전시실, 시청각실, 사무실, 편의시설 등			
<b>구분</b>	재심의('23.5.)	소위원회('23.6)	소위원회(금회)
건축면적	1,084.34㎡	1,063.63㎡	1,029.57㎡
연면적	3,130.46㎡	3,132.51㎡	3,055.13㎡
규모 /최고높이	지상 1층, 지상 1층 / 8.4m	지상 1층, 지상 1층 / 8.4m	지상 1층, 지상 1층 / 8.4m

○ 행정처분사항 결과

-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통지('23. 6. 28.) : 조건부 허가

- 허가조건 : 착공신고 전 조경 및 건물색채 등에 대해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 제출